



# (사)한국유통법학회 뉴스레터

NEWS LETTER OF THE KOREA DISTRIBUTION LAW ASSOCIATION

제2017-01호 2017. 1. 18.

발행인	회장 최영홍 교수	편집인	총무이사 안수현 교수	편집인	총무이사 문상일 교수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법학관 414호(136-701)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130-791	주소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522호(406-772)
Tel(Fax)	02-3290-1904(02-523-0600)	Tel	02-2173-3271(2966)	Tel(Fax)	032-835-8329(0771)
E-mail	yc478@korea.ac.kr	E-mail	sooahn@hufs.ac.kr	E-mail	moonsi97@inu.ac.kr

## 인사말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가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유통산업선진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해결과제”로 정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몇몇 입법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담은 김천수 교수의 발제, 유통산업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밝히는 오경석 팀장의 발제, 소비자인 지역주민이 부지불식간에 규제당하면서도 피해로 인식하지 못했던 대형유통업체 서틀버스 운행금지에 관한 문상일 교수의 발제, 그리고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유통방식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이병준 교수의 발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막연히 나와 관계없는 “그들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유통규제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소비자인 국민의 일상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법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원리에 반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유통에 대한 규제가 “그들에 대한 규제” 차원을 넘어 “우리에 대한 규제”로까지 이어지는 지점에 서부터 민주성은 약화되고 불량입법으로의 반민주성이 강화됩니다. 아무리 민주로 포장해도 법의 내용이 그러하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원리가 유통규제의 한계로 작용하는 점을 새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8.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 근배





- \* 참가비 안내
- 비회원 및 회비 미납 회원 : 1인당 2만원 (당일 학회회비 납입시 면제)
  - 회비 납입 회원: 면제 (법인회원 소속 참가인원 5인까지 면제)

**[사]한국유통법학회 2016년 주요사업 경과****1. 춘계공동학술대회 (2016. 2. 26)**

- 대주제 : “유통규제와 소비자보호”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 최 :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 하계 Workshop (2016. 6. 16 - 17)**

- 대주제 : “한국 유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장 소 : 홉플러스 아카데미(무의도 연수원)

**3.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발간 (2016. 6. 30)****4. 추계공동학술대회 (2016. 11. 4)**

- 대주제 : 유통분야의 경쟁법적 쟁점
-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 주 최 : 한국유통법학회, 한국경쟁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5. 「유통법연구」 제3권 제2호 발간 (2016. 12. 31)****6. 동계 산학 Workshop (2017. 1. 11 - 15)**

- 대주제 : “2017년 한국 유통산업의 현안과 전망”
- 장 소 : 태국 카오야이

## 학회 고문 및 집행임원

직 함		성 명
고 문	학계	임영균(광운대학교 교수)
		박주영(숭실대학교 교수)
	업계 (가나다 순)	강동남(한국백화점협회 상근부회장)
		고인배(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김윤태(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박재구(BGF리테일 대표)
		설도원(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심관섭(미니스톱 대표)
		어원경(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
		어청수(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윤일중(GS리테일 고문)
		이범돈(크리토피아 대표)
		이영덕(한솔도시락 대표)
		정승인(코리아세븐 대표)
		조상호(SPC 대표)
허연수(GS리테일 대표)		
회 장		최영홍(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회장		염규석(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감 사		김인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이사(학계)	기획이사	김천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 영(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무이사	문상일(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이사	심재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판이사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난설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이사	김재두(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원동욱(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b>국제이사</b>	김영완(중국 산둥대학교 교수)
		양만식(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b>섭외이사</b>	곽관훈(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경욱(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형(법률사무소 하우림 대표변호사)
		최지현(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현인섭(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혁(국회 정책연구위원 전문위원)
	<b>홍보이사</b>	김종수(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흥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준(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b>간사</b>	한민정(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과정)

## 학회지 출간 및 투고 안내

(사)한국유통법학회에서는 학술지 『유통법연구』 제4권 제1호에 게재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귀중한 원고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투고료를 지급합니다. 더불어 새로 마련된 ‘(사)한국유통법학회 우수논문 시상규정’에 따라 2017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1편을 선정하여 시상(상패 및 상금 300만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발간예정일 : 2017. 6. 30.

■ 원고투고 마감일 : 2017. 5. 31.

■ 논문 보내실 곳

- 이메일: 한국유통법학회 편집위원회 ([kdla2013@daum.net](mailto:kdla2013@daum.net) 담당자 편집간사 한민정)
- 우 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법학관 414호
- Tel: 02)3290-1904
- Fax: 02)523-0600

##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3. 10.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학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법학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연구 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내부 편집위원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과 편집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규정)**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논문 심사 규정

제정 : 2013. 10.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 각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한 촉탁논문 및 학술발표논문 등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5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담당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1.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필요'
4.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유보함'
5.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재 불가'

**제6조 (논문게재여부결정)** 게재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의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통보)** ① 출판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하여는 사람 또는 관여했던 사람은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 논문투고 및 학회지발행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 10. 10.

개정 : 2015. 4.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유통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의 투고요령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② 법률 분야의 종사자

③ 대학원생으로써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제출기일)** ① 「유통법연구」는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발간하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 전(5월 31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원문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한다.

③ 논문을 보낼 곳: 한국유통법학회 <kdla2013@daum.net>

**제4조 (논문의 형식)** ① 논문은 연구논문, 판례논문,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제출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동전화),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논문은 ,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A4용지 1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논문은 별첨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접수)**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저자와 (사)한국유통법학회에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우수논문 선정 규정

2015. 10. 2.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 정관 제4조 제5호에 근거하여 유통법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논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 대상 및 추천)** ① 우수논문은 심사일 현재 최근 1년간 ‘유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② 본회 회원과 고문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우수논문 심사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우수논문 평가위원회 구성)** 우수논문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위원 전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우수논문 심사 및 선정)** ① 평가위원회는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유통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그 평가에 기초하여 우수논문 1편을 최종 선정한다.

**제5조 (우수논문 시상)** 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본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실시한다.

② 우수논문 수상자에게는 수상 상패·상금을 수여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유통혁신대상 시상규정

(2016. 8.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이하 “유통법학회”라 한다)가 시상하는 유통혁신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자) ① 유통혁신대상은 대한민국 유통산업과 유통법제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기업 또는 단체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통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는 개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방법) ① 유통혁신대상은 제2조의 뜻을 기재한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시상한다.

② 제2조의 수상자에게는 상패(賞牌)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시상권자) 유통법학회장은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유통혁신대상을 시상한다.

제5조(공적심사기관 및 심사방법) ① 유통법학회장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통법학회에 유통혁신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유통법학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1년이며 다시 위촉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 ① 유통법학회의 고문과 상임이사는 유통법학회 기업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유통법학회 임원 3인 이상은 연명한 서면으로 제2조 제2항의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시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진실한 내용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유통법학회 사무국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상 기회의 공정) 시상권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유통법학회 창립기념일 또는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9조(연속 시상의 금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속하여 시상할 수 없다.

제10조(세부 사항) 유통법학회장은 추천서의 양식이나 공적조서의 기재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회 회원 동정사항

\* 기타 직장이거나 연락처 변경 등 일상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총무이사 문상일 교수(moonsi97@inu.ac.kr) 또는 학회이메일(kdla2013@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 안내

(사)한국유통법학회 홈페이지는 <<http://www.distributionlaw.or.kr>>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 학회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학회소식

## ◎ 춘계공동학술대회

2016년 2월 26일(금)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에서 “유통규제와 소비자보호” 라는 주제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16년 하계 산학 Workshop 개최

2016년 6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홈플러스 아카데미(무의도 연수원)에서 “한국 유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리테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애터미(주), 위메프, 쿠팡, (사)한국백화점협회, (사)한국직접판매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TV홈쇼핑협회와 공동으로 2016년 유통법학회 하계 산학 Workshop을 개최하였습니다.



◎ 추계공동학술대회

2016년 11월 4일(금)에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유통분야의 경쟁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17년 동계 산학 Workshop 개최

2017년 1월 11일(수)부터 15일(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Khao Yai 리조트 특별세미나실에서 “2017년 한국 유통산업의 현안과 전망” 라는 주제로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애터미(주), (사)한국백화점협회, (사)한국직접판매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TV홈쇼핑협회와 공동으로 2017년 유통법학회 동계 산학 Workshop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한국유통법학회 회비(기부금) 현황 및 납부 안내

### 1. 회비·기부금납부현황

#### \* 2015년

법인회원: (주)이마트,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편의점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사)한국백화점협회, (주)크린토피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직접판매협회, (주)BGF리테일, 아모레퍼시픽, GS리테일, (주)SPC, 코리아세븐, (주)아이마켓코리아 - 입금일자 순

일반회원: 최영홍 회장(3,000,000), 이동원 이사(100,000), 김재두 이사(100,000), 문상일 이사(100,000), 염규석 부회장(300,000), 현인섭 이사(100,000), 김주형 이사(100,000), 김경욱 이사(100,000), 최문희 이사(100,000), 박영준 이사(100,000), 최병규 이사(100,000), 안수현 이사(100,000), 김영완 이사(100,000), 김종수 이사(100,000), 이혁(50,000), 강영기(50,000), 진도왕(50,000), 손영화(100,000), 유병국(50,000), 이형규(100,000), 맹수석(50,000), 최난설현(50,000), 김인현 감사(200,000)

특별회원: 윤태운(100,000), 강진아(100,000), 이승용(100,000), 백대용(100,000), 이동훈(100,000), 최희관(100,000), 김병배(100,000), 이익원(100,000), 주현영(100,000), 김성규(100,000), 차상진(100,000)

기부금: 동성화학공업(주)(10,000,000)

#### \* 2015년 신규회원 명단

법인회원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아이마켓코리아

일반회원 : 이형규(한양대 교수), 맹수석(충남대 교수), 손영화(인하대 교수), 진도왕(인천대 교수), 유병국(인천대 교수), 안수현(한국외대 교수), 최난설현(연세대 교수)

특별회원 : 윤태운(공정위 사무관), 강진아(공정거래조정원 변호사), 이승용(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대용(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동훈(법률사무소 도경 변호사), 최희관(롯데닷컴 법무팀장), 김병배(법률사무소 김&장 변호사), 차상진(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 이상 가입 순

**\* 2016년 (12. 31. 기준)**

법인회원 : 애터미(주)(2,000,000), GS리테일(3,000,000), NS홈쇼핑(5,000,000), 아모레퍼시픽(3,000,000),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5,000,000), (주)BGF리테일(3,000,000),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5,000,000), (사)한국직접판매협회(5,000,000), (주)이마트(3,000,000), 코리아세븐(3,000,000), 한국미니스톱(3,000,000),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5,000,000), (주)SPC(3,000,000), TV홈쇼핑협회(5,000,000), 쿠팡(3,000,000),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5,000,000), 한국백화점협회(5,000,000)

일반회원 : 최영홍 회장(3,000,000), 염규석 부회장(300,000), 김인현 감사(200,000), 김천수 이사(200,000), 임정하 이사(200,000), 문상일 이사(100,000), 원동욱 이사(100,000), 김경욱 이사(100,000), 현인섭 이사(100,000), 김주형 이사(100,000), 심재한 이사(100,000), 김영완 이사(100,000), 김재두 이사(100,000), 광관훈 이사(100,000), 신호영 이사(100,000), 강승준 이사(100,000), 심영 이사(100,000), 오금석(100,000), 김윤수(100,000), 김진봉(100,000), 이동구(100,000), 엄기섭(100,000), 최병규(100,000), 이동훈(100,000), 이종훈(100,000), 박상철(100,000), 이승용(100,000), 이혁 간사(50,000), 최우령(50,000), 김치걸(50,000), 김순석(50,000), 김지현(50,000), 김두진(50,000), 김윤정(50,000)

기부금 : 임영균 학계고문(1,000,000), 최영홍 회장(2,000,000), 애터미(주)(5,000,000), 박상철(1,000,000), 동성화학공업(주)(10,000,000)

\* 위 납부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신규회원 명단**

법인회원 : 애터미(주), 쿠팡

일반회원 : 김중우(강남대 교수), 김치걸(직접판매공제조합 전이사장),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 연회비안내

- \* 2017년 회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하신 회비는 요청하시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 개인회원의 회비는 이사와 특별회원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입니다.
- \* **법인회원은 ①대기업(매출 1조 이상) 300만원, ②대기업이 회원인 협회 300만원, ③기타 법인회원 200만원**입니다.
  - 회비통장 계좌번호: (하나은행) 391-910012-34204
- \* 유통산업포럼 회원단체는 포럼회비를 별도로 다음의 계좌로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럼회비통장 계좌번호: (하나은행) 391-910014-85104

##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원가입안내

1. 본 학회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학회로 송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본 학회는 정관에 의거 다음과 같은 3종류의 회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① 일반회원 : 유통법, 공정거래법 및 상거래법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
  - ② 특별회원 : 유통기업에 종사하거나 유통에 관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
  - ③ 법인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실체(entity)
3.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① 일반회원 : 5만원
  - ② 특별회원 : 10만원
  - ③ 법인회원 : ㉠ 대기업(매출 1조 이상) 300만원, ㉡ 대기업이 회원인 협회 300만원  
㉢ 기타 법인회원 200만원
  - ④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유통법학회  
하나은행 391-910012-34204
- 학회사무실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법학관 414호(회장)  
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522호 문상일 교수연구실(총무이사)
- 전 화 : (총무이사 문상일) H.P 010-5460-9732 / TEL 032-835-8329  
(총무간사 한민정) H.P 010-6645-2733 / TEL 02-3290-1904
- Fax : 02-523-0600
- E-mail : kdla2013@daum.net
- 홈페이지 : www.distributionlaw.or.kr
- ※ 가입신청서 송부처 : 우편(학회사무실), Fax 또는 E-mail 중 편하신 방법.

(사)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영홍